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6·3항쟁 사망부상공로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

■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59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 6·3항쟁 사망·부상·공로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 ..	3
※ 참고자료	15

I. 제안경위

1.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5. 4. 8.
3. 회부일 : 2025. 4. 9.

I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6·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6·3항쟁사망자·부상자·공로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신설).
- 나. 6·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38조).
- 다. 6·3항쟁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IV. 검토의견 : 6·3항쟁 사망·부상·공로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

□ 개정안은 6·3항쟁 관련 사망자·부상자·공로자(이하 ‘6·3항쟁 유공자’라 한다)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이들 및 그 유족에게 교육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 실시 및 의료지원 등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13. (생략) <u><신설></u>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 ----- ----- ----- ----- ----- ----- 1. ~ 13. (현행과 같음) <u>13의2. 6·3항쟁사망자: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하여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6·3항쟁(이하 “6·3항쟁”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u>
<u><신설></u>	<u>13의3. 6·3항쟁부상자: 6·3항쟁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u>

<신 설>

14. ~ 18. (생 략)

② ~ ⑥ (생 략)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의4. 6·3항쟁공로자: 6·3항쟁에 참가한 사람 중 제13호의2와 제13호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14. ~ 1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신체검사) ① -----

-----제13호의3·제15호-----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
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생략)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생략)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

1. -----

-----6·3항쟁부상자, 6·3항쟁공로자, 공상공무원-----

2. -----
-----6·3항쟁사망자, 순직공무원-----

3. (현행과 같음)

4. -----
-----6·3항쟁사망자, 순직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4·19혁명공로자, 6·3항쟁공로자----

2. (생 략)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
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④ (생 략)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
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
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
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
로순직자의 배우자

3. (생 략)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
로순직자의 자녀

2. (현행과 같음)

3. -----
-----6·3항쟁부상자, 공상공
무원-----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

-----.

1. -----

-----6·3항쟁부상자, 6·3항
쟁공로자, 공상공무원-----

2. -----
-----6·3항쟁사망자, 순직공
무원-----
--

3. (현행과 같음)

4. -----
-----6·3항쟁사망자, 순직공
무원-----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
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
인의 자녀

②·③ (생략)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
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 공상군
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
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
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제38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부장
관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
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

5. -----
-----6·3항쟁부상자, 공상공
무원-----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

-----6·3항쟁부
상자, 공상공무원-----

-----.

제38조(직업훈련) ① -----

-----6·3항쟁부상자, 공상
공무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진료) ① -----

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

-----6·3항쟁부
상자, 공상공무원-----

②·③ (현행과 같음)

④ -----6·3항쟁부상자, 공상공무원-----

게 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생 략)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

-----6
· 3항쟁부상자, 공상공무원-----

-----.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

-----6·3항쟁부상자,
공상공무원-----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양로지원) -----

-----6·3항쟁부상자, 공
상공무원-----

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생략)

② (생략)

-----,

-----.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

-----.

1. -----
-----6·3항쟁부상자, 공상공무원-----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6·3항쟁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상에 반대하여 일어난 운동으로, 10만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한일회담 반대와 군사정권 퇴진 운동에 참가한 것을 1964년 6월 3일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

하여 한일국교정상화회담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으며,¹⁾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²⁾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용 결정한 6·3항쟁 관련자는 총 84명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6·3항쟁 관련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계	보상			명예회복				
			소계	사망	상이	소계	유죄판결	학사징계	해직	기타
인원	신청	168	26	6	20	142	73	29	4	36
	인정	84	13	2	11	71	42	27	2	-
	불인정	84	13	4	9	71	31	2	2	36
금액	보상금	1,029	836	380	456	193	155	5	33	-

자료: 국가보훈부

1) 출처 : 국가보훈부

※ 63항쟁(한일회담반대운동) 개요

- ▲ 1964년 3월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 “한일회담 반대”를 외치는 시위 발생 후 전국적으로 확대, 학생대표가 대통령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진정되다가,
- ▲ 정부가 한일회담을 계속 추진하자 그 해 6월 3일 전국적으로 10만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한일회담 반대와 군사정권 퇴진을 외치며 시위에 참가
- ▲ 정부는 시위진정을 위해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 다수의 학생이 체포되었으며 60여명의 주동자는 군사재판에 회부됨

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개정안은 6·3항쟁에 참가하여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예우·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긍정할 수 있음.

○ 6·3항쟁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의 지원은 제외되나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현재의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개정안에 따른 지원현황>

지 원 사 항	제 외 사 항
생활조정수당(제14조), 교육지원(제22조) 취업지원(제29조), 직업훈련(제38조) 진료(제42조), 대부(제47조) 보철구의 지급(제43조의2), 의학적 재활 등(제44조), 양로지원(제63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제6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67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제63조의2) 양육지원(제64조), 주택의 우선 공급(제68조) 생업지원(제68조의2)	보상금(제12조) 간호수당(제15조) 부양가족수당(제15조의2) 중상이부가수당(제16조) 사망일시금(제17조)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보훈보상의 원칙,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국가유공자 포함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6·3항쟁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하여는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조).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이나, 그 이전에 ‘희생과 공헌의 정도’는 국가유공자의 대상이 되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6·3한일회담 반대운동’이 4·19혁명 또는 5·18민주항쟁과 같이 국가유공자 또는 민주유공자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으로 보는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다른 비슷한 유형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국가유공자 포함 여부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용된 다양한 민주화운동 관련자³⁾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예우와 보상을 할 것인지를 아울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⁴⁾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소관)에 따라 6·3항쟁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3) 【참고자료 1】 참조

4) 22대 국회에서 6·3항쟁 관련자를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및 그 유족·가족에 대하여 예우·지원을 골자로 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024.6.10..)이 발의되어 정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임.

전반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총 9,844명, 보상 829, 명예회복 9,015)이 실시되었으며,⁵⁾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소관)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도 진행 중(총 787명, 보상 103, 명예회복 684, 2025.5월 기준)에 있음.⁶⁾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 보훈보상의 원칙, 사회적 공감대,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6·3항쟁 관련자를 포함하여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참고1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인정사례

* ('23.7.4.) 법안심사 소위자료 발취

구 분	건수	사 건 별		
1. 정치·반독재 운동	4,961	○ 한일회담반대운동 ○ 삼선개헌반대운동 ○ 부마항쟁 ○ 3당합당 반대사건	○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 구로구청 점거 농성 사건	○ 5.18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 ○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
2. 사상·이념단체 결성 및 활동	734	○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 민청학련사건 ○ 인혁당재건위사건	○ 남민전사건 ○ 민중교육지 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 애학투사건 ○ 제헌의회(CA)그룹 사건 등
3. 언론민주화운동 관련	371	○ 동아자유언론실천 운동	○ 조선자유언론실천 운동	○ 신군부 언론인 강제 해직사건 등
4. 전교조 등 교육 민주화 활동	1,768	○ 전교조결성 해직사건 등	○ 중고사립학교 학원민주화사건	○ 조선대·세종대 등 학원 민주화사건 등
5. 노동운동 관련	1,417	○ 전태일분신사건 ○ 청계피복노조사수 투쟁사건 ○ 동일방직 노조탄압사건	○ 반도상사 노조탄압사건 ○ 대우어패럴/구로연대투쟁 사건	○ 풍산금속 노동쟁의 사건 ○ 현대중공업 노동쟁의사건 등
6.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사건	129	○ 박종철(87년), 이한열(87년), 강경대(91년) 등		
7. 기타	464	○ 부산동의대사건	○ 통일운동관련사건	○ 농민운동 관련 등

※ (출처)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추진단

□ 개요 및 진행경과

- 1964년 3월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 “한일회담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발생,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학생대표가 대통령을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진정되다가, 정부가 한일회담을 계속 추진하자 그해 6월 3일 전국적으로 10만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와 군사정권 퇴진을 외치며 시위에 참가
- 정부는 시위 진정을 위해 서울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 학생 1,200여명이 체포되었으며, 60여명의 주동자는 군사재판에 회부됨

※ 당시 시위 과정 중 피해자의 정확한 규모 확인은 불가능

□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6.3관련자 인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보 상			명 예 회 복				
		소계	사망	부상	소계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구금·수배
심 의	168	26	6	20	142	73	29	4	36
인 정	84	13	2	11	71	42	27	2	-
불인정	84	13	4	9	71	31	2	2	36

□ (참고) 「민주화보상법」 등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현황

(‘24.12월 기준 / 단위 : 건)

구 분	계	보 상			명 예 회 복				
		소계	사망	부상	소계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구금·수배
합 계	10,587	930	137	793	9,657	6,412	2,320	331	594
민주화보상법	9,844	829	136	693	9,015	6,395	2,300	320	-
부마항쟁보상법	743	101	1	100	642	17	20	11	594